

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(제74조제1항 관련)

구 분	생 활 비 비 율
부양가족이 없는 경우	40퍼센트
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	35퍼센트
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	30퍼센트
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	25퍼센트

비고: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「민법」에 따르되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